

입학사정관제성적조정평가규정

제 정	2011. 12.
개 정	2013. 2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입학사정관제 실시에 따라 서류 및 심층면접 시에 사정관별 점수 차이의 폭을 줄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.

제2조 (구성) 해당학과 내부(교수)위촉사정관 2인 및 전임입학사정관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별도의 위원을 임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 (심의) 다음과 같은 조정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내용을 재조정한다.

①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서류평가 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영역별 만점 합계의 30%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

②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심층면접평가 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영역별 만점 합계의 30%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

제4조 (발의) 전임입학사정관은 조정평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안 발생 시 2일 이내에 학과에 재 심의를 요구하며 재심의 요구 후 2일 이내에 의견을 확정한다.

제5조 (회의) 3명 이상의 위원의 참여로 개최하고, 전원 일치 원칙을 준용한다.

제6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사정관실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